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42

발의연월일: 2021. 6. 10.

발 의 자:이상헌・송재호・유정주

신정훈 • 전용기 • 박 정

유동수 • 홍정민 • 김정호

이용빈 · 양정숙 · 임오경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의수립절차 등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인 학예연구사 또는 학예연구관이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비전문 가가 문화재 업무를 맡기도 하며, 그마저도 이들은 문화재 관리 업무 외에 다양한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문화재 연 구조사 및 관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시 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이러한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는 전문적 문화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7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 4. 제4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제1항 후단 중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를 "시·군·구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 ④ (생 략)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정
	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
	존·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특
	<u>별</u> 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
	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
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	립) ①
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u>이 경우 시행계획에</u>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u> 어야 한다.</u>
<u><신 설></u>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에 관한 사항
<u><신 설></u>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u><신 설></u>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 저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 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 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 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 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 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 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 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 • 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

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	
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u>사항</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시·군·구가	

4. 제4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 체가 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